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권경영 지침을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12월 27일

##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지침 제66호

###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권경영 지침 일부 개정

제9조제2항 중 “인권침해가 발생하지 노력해야 하며” 를 “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” 로 한다.

제19조제2항제5호를 같은 항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인권경영 실태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

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재단은 인권경영 실천 및 인권경영 점검의무 준수를 위해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- ② 재단은 구성원의 인권의식 수준 진단 및 제고를 위해 인권경영 실태조사(설문조사)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
제30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재단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내규심의위원회 의결을 얻은 후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